

『해외투자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』 용역  
과 업 지 시 서

2022. 9.



# 과업개요

1. 과업명 : 해외투자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 용역

2. 계약기간 : 계약일 ~ 5개월 간

3. 소요예산 : 174,440,480원 (VAT포함)

## 4. 과업목적

- KIND는 해외투자개발사업(PPP)의 주체로서 KIND의 역할 및 투자개발사업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입증을 위한 용역 필요
- 해외투자개발사업(PPP)이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위치를 점검하고,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
  - 기업들의 PPP사업 참여와 정부의 해외건설사업 수주지원 확대에 따라 PPP사업에 적합한 성과 분석 방법 정립 필요

## 5. 과업범위

- 해외투자개발사업이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직·간접적 이슈\*를 발굴·검토하여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도출
    - 해외투자개발사업의 다양한 연관분야 파급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정확히 측정하여, 국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유·무형 기여도 분석
- \* 생산·고용·소득효과, 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, 국가 경쟁력 제고 등

6.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 [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]

## 1. 세부 과업 내용

### □ 해외투자개발사업(PPP)의 동향 및 전망 조사

- 인프라 및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정의 설정
  - 국내 법령(민간투자법, 해촉법 등)의 '인프라' 및 PPP사업의 정의, 발주·계약 등에 따른 사업 유형, 사업 절차, EPC사업과의 차이점 등
- 해외건설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
  - 글로벌 건설시장 규모(EPC, PPP 구분), 국내 기업 수주 실적, 향후 글로벌 EPC 및 PPP 시장 전망 조사

### □ 해외투자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

- 파급효과 분석 방법론 제시
  - 선행 유사 연구(산업연관분석 적용) 검토, 신규 분석 기법 비교·분석 수행, 해외투자개발사업 파급효과 분석에 적합한 기법 및 절차 제시
- 해외투자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
  - 해외투자개발사업의 현재까지의 직·간접적 성과 분석
  - 해외투자개발사업(EPC, O&M 및 금융투자 등 구분)의 유발계수(생산, 부가가치, 고용분야) 도출 및 경제적 파급효과(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포함) 비교 분석\*
  - \* 해외투자개발사업의 장·단기 파급효과 예측 포함(2025년, 2030년, 2035년)
  - 해외투자개발사업의 KIND 자본투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

## □ KIND 역할 정립 및 발전과제 도출

### ○ KIND 역할과 성과 분석

- 해외투자개발사업 전문 지원기관으로서의 KIND의 역할 정립
- KIND 설립 이후 글로벌 건설시장과 국내외 경제 기여 성과 및 평가
- KIND 설립 이후 해외건설 수주기여도 및 PPP 사업 수주기여도 분석  
(수주건수, 수주금액 등 통계적 수치로 분석)

\* 정부-해외건설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FGI(Focus Group Interview) 실시 후 분석결과를 연구에 활용(조사범위 및 방법 등은 KIND와 협의 후 진행)

### ○ KIND 및 우리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발전과제 등 도출

- 과거 실적 및 현재 해외건설시장 진출 현황에 근거한 향후 KIND 및 우리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및 발전과제 등 도출
- 기타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법·제도 등 정책제언

## 2. 과업수행 일정

### ① 착수보고 :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

- 보고 내용 :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, 세부 계획(일정)표, 참여 인력 등
- 보고 방법 : 착수보고서 서면 제출

### ② 중간보고 :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

- 보고 내용 : 과업의 추진상황 및 중간 산출물
- 보고 방법 : 추진상황 보고서 및 중간 산출물 서면 제출

### ③ 최종보고 :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

- 보고 내용 :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
- 보고 방법 : 최종 진행 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서면 제출

### ④ 성과품 작성 및 제출

-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및 제출
- 계약종료일 이전 최종 산출물 제출(한글 및 PDF 형태)

※ 착수보고, 중간보고, 최종보고는 공사 요청 시 협의 하에 대면으로 진행 가능

※ 상기 일정 외 수시 보고 및 협의 요청 가능하며, 이에 응해야 함

### 3. 과업수행 지침

#### ① 일반사항

-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의해 수행하며,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
-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전략, 사업범위 및 업무 내용 등을 명확하게 제안서에 기술하고 산출근거와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
-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고,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
-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, 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, 협의된 사항은 본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
- 제안요청서, 과업지시서, 협상내역서 등의 문구,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공사의 의견에 따라야 함
-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제반경비는 과업수행업체의 부담을 원칙으로 함

#### ② 과업수행팀의 구성 및 운영

-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해외건설 및 경제학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,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할 인력을 3명 이상(책임 연구원 포함) 편성·운영하여야 함
- 과업수행업체는 본 과업 연구팀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하여야 함

- 공사는 과업 참여 인력이 과업수행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과업수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
- 과업수행업체는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체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아 교체할 수 있음

### ③ 자료 인용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

- 과업수행업체는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- 과업수행 시 사용하는 도구, 업무설계서, 솔루션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 과업수행업체의 책임으로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하며, 과업수행에 인용되는 각종 통계자료 등은 반드시 자료의 타당성, 실효성, 신뢰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활용하여야 함
- 사업기간 또는 최종검사 이후라도 인용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함

### ④ 과업내용의 변경 및 조정

- 과업의 수행범위는 공사의 제안요청서, 과업지시서 및 협상내역서 등의 내용으로 하되, 과업기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
- 과업과 관련된 공사의 각종 공문서와 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·보완·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## 5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조건

- 연구인력의 인원 조정 또는 연구인력 등급 변경시
- 과업량의 증가 또는 감소 등으로 과업기간 변경시
- 기타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 여건의 변동시

## 6 소유권에 관한 사항

- 과업완료시 성과물은 보고서(USB 등 저장매체 활용 가능)의 형태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, 과업 수행으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공사에 귀속됨
- 모든 과업성과물은 공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

## 7 하자 및 책임소재 등

- 과업수행업체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공사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관련한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지며,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
-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업체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업체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
- 공사는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공사에서 주관하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검사요원은 공사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전문가로 함
- 과업 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, 검사내용에 대해 공사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,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함

## 8] 보안 대책

-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및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
- 연구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,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

## 9]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조치

- 아래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업수행업체는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수 없음
  - 과업지시서,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 협상내역서, 기타 계약 관련 서류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  - 성과품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규격(내용의 수준)에 미달되게 작성된 경우
  - 보안사항을 유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악용하는 등의 경우
  - 과업의 수행에 있어 고의,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의 지연되거나 공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과업수행업체의 부도 또는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